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675
----------	-------

발의연월일 : 2024. 5. 17.

발 의 자 : 양경규 · 강은미 · 장혜영
박용진 · 심상정 · 이재민
용혜인 · 김주영 · 강성희
배진교 · 윤미향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그 사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등에 대하여 출석·보고·진술 또는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업무상황,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판정·결정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가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현행법의 처벌 규정은 노동위

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이에 응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스스로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것은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에 스스로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그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노동위원회가 현행법에 따라 요구하여 취득한 자료 또는 조사한 자료 등을 관계 당사자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 판정·결정 업무 등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3조 및 제31조).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제출한 서류나 위원 또는 조사관이 조사하거나 작성·가공한 업무상황, 서류 등을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⑦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도 같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지 아니하였으나 노동

위원회에 스스로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 후 스스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생 략) <u><신 설></u>	제23조(위원회의 조사권 등) ① (현행과 같음) <u>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노동조합, 사용자, 사용 자단체, 그 밖의 관계인이 제출 한 서류나 위원 또는 조사관이 조사하거나 작성·가공한 업무 상황, 서류 등을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건의 당사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u>
<u>② ~ ④</u> (생 략)	<u>③ ~ ⑤</u> (현행 제2항부터 제4 항까지와 같음)
<u>⑤ 노동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 의 부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⑥ 노동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다른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서 의 부분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 게 송달하여야 한다.</u> <u>⑦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u> <u>이 경우 노동위원회로부터 서</u>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u>2.</u> (생략)	<u>류의 제출을 요구받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도 같다.</u> 제31조(벌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권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u>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현행과 같음) 2. <u>제23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지 아니하였으나 노동위원회에 스스로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u> 3. (현행 제2호와 같음)
--	---